

#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9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가.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위·해촉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 5조의2)

## 개정조례안 : 불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관련사업계획서 : 불임

## 예산수반사항 : 57,750천원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○ 시민기자 교육자료 제작  | 10,000원*50부*4회  | = 2,000천원  |
| ○ 시민기자 원고료      | 30,000원*50건*12월 | = 18,000천원 |
| ○ 시민기자와의 간담회    | 3,500,000원*1회   | = 3,500천원  |
| ○ 자문위원회 수당      | 80,000원*7명*4회   | = 2,240천원  |
| ○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| 10,000원*50부*4회  | = 2,000천원  |
| ○ SNS 홍보이벤트 경품  | 30,000,000원*1식  | = 30,000천원 |

##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사전 입법예고 기간 : 2012. 10. 15. ~ 2012. 11. 5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제5조 제명 및 본문중 “명예기자”를 “시민기자”로 하며, “홍보를 위하여”를 “홍보를 위하여 7명 이내의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민기자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 1. 본인이 희망할 경우
  2.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  3. 그 밖에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회) ①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'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1.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

- 2.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 자,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
  - 3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명예기자” 를 “시민기자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공보관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보관 한 상 철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소셜미디어계장 박 근 수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정 삼 (행정 2045)

## 수정안 조문 대조표

당초	수정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기자(이하 “명예기자”라 한다)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.	(삭제)
가.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반명예기자	
나.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명예기자	
제4조(시민참여 보장) ① ~ ② (생략)	제4조(시민참여 보장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(신설)	③ <u>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</u>
제5조(-----명예기자)	제5조(-----시민기자)
----- ----- <u>홍보를 위하여</u> ----- ----- <u>명예기자</u> ----- -----.	① ----- ----- <u>홍보를 위하여 7명 이내의</u> ----- <u>시민기자</u> ----- -----.
(신설)	② <u>시민기자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</u>
(신설)	③ <u>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u> 1. <u>본인이 희망할 경우</u> 2. <u>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</u> 3. <u>그 밖에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
(신설)	④ <u>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</u>

당초	수정
(신 설)	<p><u>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.</u></p> <p><u>제5조의2(위원회) ①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'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 자문위원회'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</u></li> <li><u>2.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자,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</u></li> <li><u>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li> </ol> <p><u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</u></li> <li><u>2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</u></li> </ol>

당초	수정
<p>제6조(지원) ① ----- <u>명예기자</u>-----  -----  -----</p>	<p>3. <u>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⑦ <u>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6조(지원) ① ----- <u>시민기자</u>-----  -----  -----</p>

#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32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2. 12. 7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## 수정이유

-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성화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시민기자의 참여자 범위 확대(7명이내→10명이내).(안 제5조제1항)

#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7명이내의”를 “10명이내의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 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 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<u>7명이내의</u>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 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 ----- ----- <u>10명이내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원안과 같음)</p>

# 안산시장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3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8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장(시장장) 주도의 장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애도와 경의를 나타내고,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규정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공직자를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정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시장장으로 규정함.(안 제2조)
- 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「안산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「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」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시장장의 대상은 공무상사망공직자 중에서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,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라. 시장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시장장 장의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은 부시장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, 위원은 국장·소장·본부장·구청장 및 직원대표(노조추천자)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고 관장사항을 정함.(안 제5조)
- 마. 시장장의 기간·절차 및 의식 등은 「전전가정의례준칙」 및 「정부의전편람」을 준용하고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·소·본부장·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바. 장례절차 주관을 위하여 행정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공보관,국 주무과장, 상록·단원 행정지원과장, 사망자 소속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사. 시장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(별표) 기준에 의하여 시 예산(예비비) 2천만원의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.(안 제8조)

**제정조례안 : 불입**

**관계법령발췌서 : 불입**

-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1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
- 「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조
- 「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」 제2조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, 제61조
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2조, 제13조, 제14조
- 「산업재해 보상보험법」 제62조, 제71조
- 「전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전전가정 의례준칙」 제12조, 제18조

**관련사업계획서 : 불입**

**예산수반사항 : 20,000천원(예비비)**

- 장제비 : 20,000천원 × 1명 = 20,000천원
  - 연간추계 소요비용 : 예측불가
- ※ 사건 발생일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로 운영

**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**

- 입법예고 : 2012. 9. 11. ~ 10. 2.(21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 : 불입**

-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사망시 지원현황
- 타 시·군·구 장례사례
- 타 시·군·구 조례 제정 현황